

1. 제정 이유

동산문화재 수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존처리계획의 수립·승인 및 수행에 관한 내용을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제정함에 따라, 동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보존처리계획의 승인 신청과 승인 통지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(안 제2조)
- 나. 보존처리현황의 보고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(안 제3조)
- 다. 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 신청과 변경승인 통지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(안 제4조)
- 라. 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생략
- 라. 기 타 : 생략

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

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보존처리계획의 승인) ① 발주자는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사업계획서
2. 보존처리계획서
3. 현황 사진

② 문화재청장이 규정 제7조제4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지하는 보존처리계획 승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.

제3조(보존처리 현황의 보고) 발주자가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보존처리의 착수 또는 완료의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.

제4조(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) ① 발주자는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사업변경계획서

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승인 신청서

*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
신청인	성명 또는 법인명	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
	주소 (전화번호:)	
대상 문화재	명칭	
	종류	수량
	소재지	
신청사항	내용	
	사유	
사업개요	착수에정일자	완료예정일자
	예정금액	
	그 밖의 사항	

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의4제2항 및 「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문화재청장(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) 귀하

첨부서류	1. 사업계획서 2. 보존처리계획서 3. 현황 사진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2. 변경된 보존처리계획서

3. 현황 사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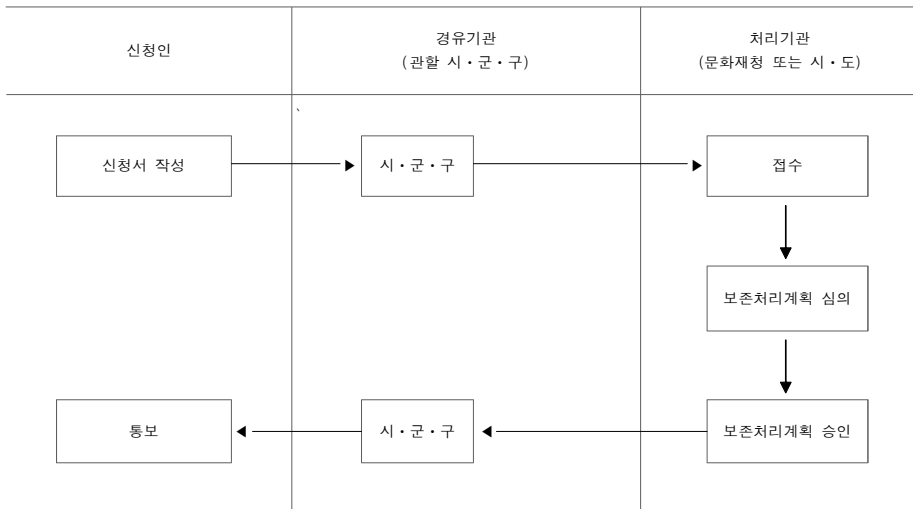
② 문화재청장이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지하는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.

제5조(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) 규정 제12조에 따라 발주자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가 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를 확인받는 확인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처 리 절 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증질지(80g/㎡)]

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승인서

(앞쪽)

승인 제	-		호
승인 받는 자	성명 또는 법인명		
	주소		
대상문화재	명칭		
	종류	수량	
	소재지		
승인사항	승인내용		
	승인조건		

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의4제2항 및 「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을 승인합니다.

년 월 일

문화재청장
(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
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)

직인

행 정 사 항

1. 이 승인은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의4에 따른 보존처리계획 승인이므로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다만, 「문화재보호법」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는 그렇지 않습니다.
2. 승인을 받고 보존처리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의5제2항제1호 및 「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」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.
3. 보존처리 중 이 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의5제2항 및 「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먼저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합니다.
4.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호를 준수하고,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·도지사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동산문화재 보존처리 ([]착수 []완료) 보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발주자	성명 또는 법인명	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
	주소 (전화번호:)	
대상 문화재	명칭	
	종류	수량
	소재지	
보고사항	보존처리명	
	보존처리내용	
사업개요	착수일자	완료예정일자
	보존처리계획 승인 번호	보존처리계획 승인 조건
	계약금액	감독자명
도급계약 개요	상호(대표자)	문화재수리기술자
	상호(대표자)	문화재수리기술자

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의5제2항제1호 및 「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」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[]착수 []완료를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보고인

(서명 또는 인)

문화재청장(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) 귀하

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
신청인	성명 또는 법인명	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
	주소 (전화번호:)	
대상 문화재	명칭	
	종류	수량
	소재지	
당초 승인사항	승인번호	승인내용
변경 신청사항	변경내용	
	변경사유	
사업개요	착수일자	완료예정일자
	예정금액	
	그 밖의 사항	

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의4제2항 및 「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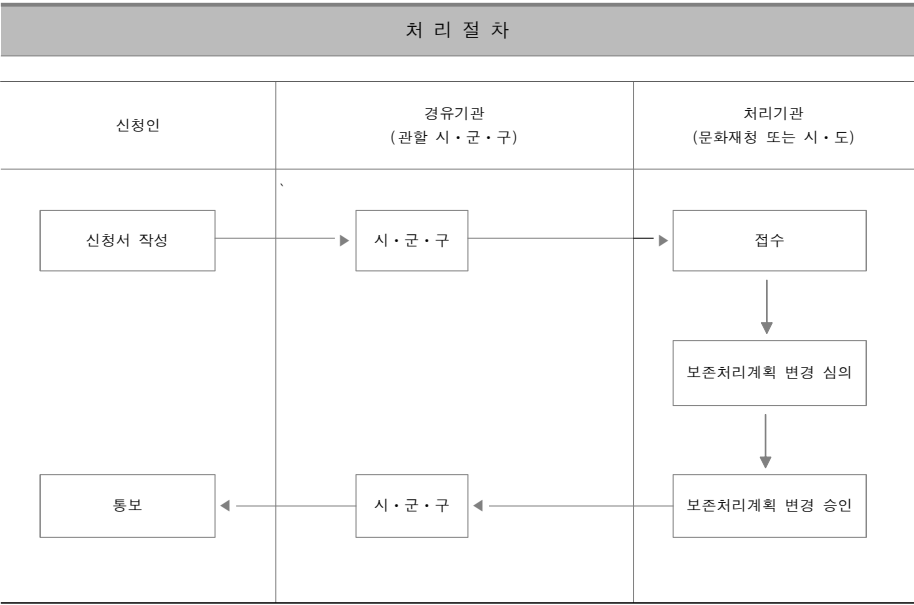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문화재청장(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) 귀하

첨부서류	1. 사업변경계획서 2. 변경된 보존처리계획서 3. 현황 사진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(뒤쪽)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서

(앞쪽)

변경승인 제 - 호		
승인 받는 자	성명 또는 법인명	
	주소	
대상문화재	명칭	
	종류	수량
	소재지	
승인사항	당초승인내용	
	(당초 승인번호 제 - 호)	
	변경승인내용	
	승인조건	

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의4제2항 및 「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」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존처리계획 변경을 승인합니다.

년 월 일

문화재청장
(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
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)

직인

행 정 사 항

1. 이 승인은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의4에 따른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이므로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다만, 「문화재보호법」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는 그렇지 않습니다.
2. 승인을 받고 보존처리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의5제2항제1호 및 「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」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.
3. 보존처리 중 이 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의5제2항 및 「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먼저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합니다.
4.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호를 준수하고,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·도지사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현장 배치 확인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즉시			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					
	자격명	자격번호					
	주소						
	소속회사	상호	대표자				
		업종	등록번호				
		소재지		(전화번호:)			
연번	배치기간	참여사업명	계약구분	직책	발주자명	확인 연월일	확인 (발주자)
1							
2							
3							
4							
5							

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1항 및 「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」 제12조에 따라
현장 배치 확인표를 제출합니다.

신청인 성명 (서명 또는 인)
대리인 성명 (서명 또는 인)
생년월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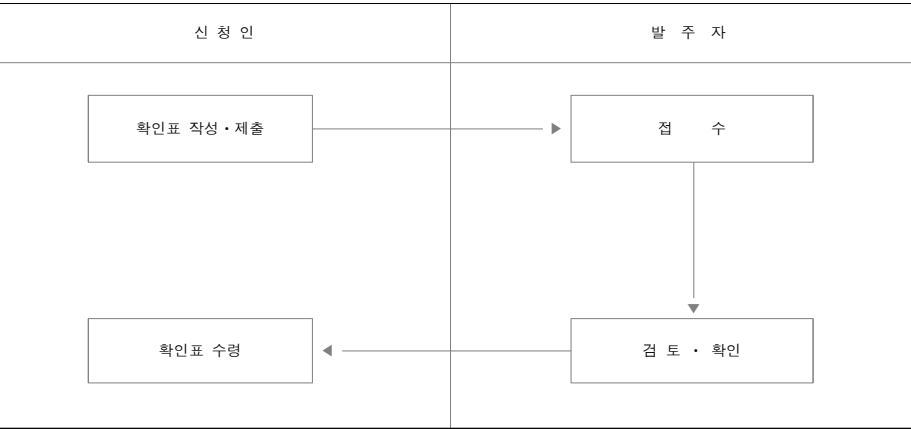
발주자 귀하

유의사항

- 신청인(본인)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「형법」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- 대리인이 신청·수령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.
- 계약구분은 수의계약규모, 수의계약규모초과를 적어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이 확인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210mm×297mm[백상지(150g/㎡)]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	
연 락 처	(042) 481 - 4920